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539호
- 다. 제출일자 : 2000년 2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00년 3월 4일

2. 제안사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흑자경영으로 전환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첫째, 국가유공단체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안 제2조제1항)
- 둘째, 국가유공자의 며느리·사위·형제·자매명의로 취득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안 제2조제3항)
- 셋째, 장애인의 며느리·사위·형제·자매명의로 취득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안 제4조제1항)
- 넷째,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안 제13조제2항)
- 다섯째,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2가구 이상(중전 5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안 제15조제1항)
- 여섯째, 아파트형 공장설립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안 제19조제1항)
- 일곱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안 제21조)
- 여덟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안 제23조의8)

4. 주요 개정내용 요약

-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

과 기업간 사업양수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IMF 이후 '98.1.15 신설된 조문으로서 '99.12.31 까지 존치하는 한시조항이므로 삭제

-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세 50% 감면규정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감면하였으나 흑자로 전환되어 더 이상 감면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제

- 국가유공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규정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국가유공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명의등록까지 확대시킴.

-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감면규정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현행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매매용 중고건설기계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임대주택법이 개정('99.11.12)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에서 2세대 이상의 소유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규정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승인 전에 미리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으로 함으로써 아파트형공장 설립지원 강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규정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성업공사) 등이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취득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현황을 지방세 감면조례에 법문으로 반영

- 5.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약 15억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0.5억원

- 취득·등록세 : [9,696명(총 국가유공자수)-6,438명(차량소유자)]×2%(예상증가율)×800만원×7%(세율) = 36,489,600원
- 자동차세 : [9,696명(총 국가유공자수)-6,438명(차량소유자)]×2%(예상증가율)×210,000원(세율) = 13,683,600원
- 장애인에 대한 감면 : △6억원
 - 취득·등록세 : [63,609명(1~3급 장애인)-22,798명(차량소유자)]×2%(감면확대증가율)×800만원×7%(세율) = 457,083,200원
 - 자동차세 : [63,609명(1~3급장애인)-22,798명(차량소유자)]×2%(감면확대증가율)×210,000원(세율) = 171,406,200원
-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 △7억원
 - 취득·등록세 : 3개소(연평균 증가개소)×2,515㎡(평균면적)×2백만원×5%(세율) = 754,500,000원
-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감면 : △7억원
 - 취득세 : 1,780억원(전국 연간거래액)×20%(서울시 점유율)×2%(세율) = 712,000,000원
 - ※연간거래대수 10,500대×20%(서울시 점유율) = 2,100대
-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감면폐지 : 5억원 증가
 - 취득·등록세 : 1,694,659천원(5개 사업자 3년간 납부계획)÷3년 = 564,886,000원

6.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 있다.
-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규제사무 없음.

7.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00.2.2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99.12.1~12.3 3일 동안 지방세감면조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확정된 시·도세감면조례 정비계획 및 개정(안)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혼자경영으로 전환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폐지코자 함이며, 또한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대상은 폐지 3건, 신설 2건, 조문개정 4건 등 총 9건이며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등으로써
 - 첫째, 폐지대상 3건 중 기업간 사업양수 재산에 대한 감면과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IMF 이후 '98.1.15 신설되어 '99.12.31까지 적용토록 하는 한시적 규정으로서, 이를 삭제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 둘째,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를 감면코자 하는 것은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된 세액만큼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이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인수시 시세를 감면토록 하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매각하기 위한 일시적인 소유이며,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2000년 말)으로 운용코자 하는 등 감면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셋째,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만 감면하였던 것을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국가유공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도 감면하자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세 운용에 있어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상이용사 등)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을 현재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만 감면하던 것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할 것이며,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에 따라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들을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하였고, 또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기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토록 한 등 조례개정안은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국가유공자와 사회활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후자전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와 중고건설기계 취득세 면제는 조례제정 당시의 상황이 변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이며,
- 또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또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다만, 시세감면조례는 공평과세원칙의 예외로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시세감면 추계액은 약 15억원으로서 이를 서울시민들이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세운용에 있어 철저한 관리와 업무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547호

다. 제출일자 : 2000년 2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00년 3월 4일

2.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2000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함.

3. 주요내용

자치구청장에게 공공용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에게 영사관 이전부지를 각각 매각하고, 재건축사업지구 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공유지분 토지를 공유자에게 각각 매각하며,